

예산 · 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 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2)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목 차

I. 경제분야(1건)

1. 충남경제-2022년 10월 충남 경기종합지수 [기경위] 1

II. 재정분야(4건)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행문위] 3
2. 충청남도 도세 추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행문위] 4
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교육위] 6
4. 고등교육 재정지원 해외사례 연구 [교육위] 9

III. 정책분야(8건)

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기경위] 12
2.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기경위] 13
3.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기경위] 15
4.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기경위] 16
5.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 [기경위] 17
6. 특별지방자치단체 탈퇴·중단에 관한 쟁점과 전망 [행문위] 18
7.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사례 고찰과 시사점 [복환위] 21
8.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농수위] 23

IV. 법률 제·개정(2건)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2인) 27
2.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8

I. 경제분야(1건)

1. 충남경제-2022년 10월 충남 경기종합지수

○ 전국 경기종합지수 동향

- 10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 출하지수는 감소하였으나, 수입액,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며 전월 대비 0.2%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대비 보합
- 10월 전국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코스피 등은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재고 순환 지표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0.2% 증가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1p 하락

○ 충남 경기종합지수 동향

- 10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디스플레이산업 재편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던 광공업 생산이 소폭 증가 전환하였으나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소비 감소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에 이어 호조를 보이던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제품도 수출이 감소하며 전월대비 0.3% 감소한 107.6을 나타냄
 -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대비 0.4p 하락
 - 주요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수입액(0.8%), 광공업생산지수(0.3%), 고용률(0.2%)은 증가, 중간재 수출액(-2.1%),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1.9%), 비제조업 인력 사정 실적(-1.4%), 판매전력량 제조업(-0.7%)은 감소
- 10월 충남의 선행종합지수는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든 구성 지표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2.8% 감소한 101.2를 나타냄. 특히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자본재수입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위축 및 지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화학산업의 위축, 반도체 경기둔화 요인이 반영되며 향후 경기하강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
 -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95.1로 전월 대비 1.3p 하락

- 주요 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전자부품 등 제조업 출하지수(4.5%)는 증가, 자본재수입액(-10.4%), KRX반도체 지수(-6.1%), 신규구인인원(-3.6%), 원자재 구입 가격(-2.3%), KRX에너지화학 지수(-2.0%) 제조업 제품 재고 전망(-0.3%)은 감소

출처 : 충남연구원(2022. 11.)

II. 재정분야(4건)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법률체계의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해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공유재산과 지방 물품이라는 서로 다른 내용이 하나의 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의 특성 차이가 반영된 세부적인 규율이 어렵고, 공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
- 공유재산과 물품은 그 정의와 관리방법에 차이가 있고, 2021년말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보유 가액이 876조원, 지방물품의 보유가액이 6조 4,145억원으로 각각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과 지방물품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정보시스템 활용 부족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는 공유재산의 세밀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단순한 부과·수납 업무만 처리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대처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는데 전액(全額) 선납(先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임대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장경기·환경 등이 급변해도 공유재산의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

○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방안

- 분법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확보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물품 관리법」으로 분법하여,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특성에 따른 관리방식을 총괄하고, 공유재산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고려

- 이는 공유재산과 지방물품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물품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현재 2단계(법-시행령)인 공유재산 법령 체계를 3단계(법-시행령-규칙)로 정비해, 분법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결할 필요

- 정보시스템 고도화

- 복잡하고 다양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모바일을 통한 현장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즉, 현재 운영 중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서울) 행정시스템에서 공유재산업무 부분을 고도화하거나, 공유재산 업무를 분리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검토

- 다양한 관리방식을 활용한 수익성 증대

- 공유재산이 유희시설로 남지 않고 적기에 활용되도록 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마련 필요
- 우선, 임대사업자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영업하면서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고려
-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임대사업자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사용료를 더 부담하도록 수입과 사용료를 연동하는 방식 가능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2. 12.)

2. 충청남도 도세 추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의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고, 오차율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충청남도의 세목별 중기 지방세 추계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충청남도 본청에서는 이듬해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수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세 당초예산과 결산 징수액

간의 차이율을 세수추계 오차율로 가정할 경우,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9.2%	14.8%	7.1%	14.0%	16.2%
충청남도	7.5%	13.1%	2.8%	-1.5%	5.0%

- 충청남도 세수추계 오차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계 방식인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개별적인 세수추계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별·세목별 특성에 맞게 변환시킨 개별분석방식이나 전문기관 추계 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음
 - 세수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의 세수추계 오차를 모수오차와 추계변수 오차로 분해하여 추계 오차 원인을 파악한 결과, 세목별로 각기 다른 당해연도 예상징수액 추정 방법이나 추계변수 또는 추계변수 전망치 산정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현행 방식보다 세수추계 오차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도세의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과 함께 추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임자에게도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방안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수추계는 단순하게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 경제 및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수를 추정하는 업무임
 - 다시 말해 세수추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이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고, 후임자에게도 축적된 세수추계 기법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시도의 운용 사례를 참고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세수추계 전문가 자문단’ 을 운용하고 이를 통해 다음 해 세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매년 9월경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자체 세입 분석모형,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망치, 시·군 세수추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망된 다음연도 세수 전망치를 두고 담당공무원, 도 의원, 한국은행 지역담당자, 부동산 관련 기관,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최종 세수추계를 확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 세수추계 프로그램 전망치,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망치 등에 대해 세수추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다음연도 세수를 확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출처 : 지방세연구원(2022. 12.)

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022.11.15. 교육부·기획재정부)

- 대학 자율혁신 위해 일반재정지원 1조 9,000억원으로 확대,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연 5,000억원 추가 지원 신설
 -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학령 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또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

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도 추진해왔다.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할 수 있어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 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3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 먼저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인 1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전면 개편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해 나간다.
- 재정 확충과 함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25억 원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34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및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7,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 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 친화형 체제도 구축한다.
-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50개로 확대하고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는 15개로 늘리는 등 직업훈련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구상이다.
-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월 30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
-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도 구축한다.
-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 이 밖에 비수도권 대학 8개교에는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도 도모한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 12.)

4. 고등교육 재정지원 해외사례 연구

○ 연구의 필요성

- 한국 고등교육 재정지원 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교육 투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
- 경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 투자 및 재정지원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및 재정지원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음

○ (정책 시사점 1) 재정지원의 규모 및 구성

- 재원 규모 확대의 필요

-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인식하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여건을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 증가의 기회로 삼아야 함
-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10%p(OECD 평균 약 36%, 한국 25%) 이하,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 대비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66% 정도(OECD 평균 150%)에 불과
- 고등교육투자의 구성으로 볼 때 한국이 공공 부담형이 아닌 시장지향형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투자액의 증가는 공공 부담만이 아닌 민간과의 공

동부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고등교육재정 구성에서 유의점**

- 최근 고등교육재정에서 공공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높은 공공투자 비중에는 수월성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함
- 투자의 구성은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정부투자의 증가의 주된 방향은, 외부성이 큰 기초학문 발전에 대한 지원을 논의로 한다면, 고급직업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에 따라 평균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기관보다는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대학에 다수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런 학생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급직업교육과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시사점 2) 학생 개인 지원

- 장학금과 대출을 통해 개인 지원을 늘렸던 기존의 재정지원 정책 방향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개인 지원 중심의 고등교육 지원방식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시장지향형으로 고등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국가의 공통점이기도 함
- 개인에 대한 지원에서 각국은 대출과 장학금의 구성, 이자율 결정 방식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어느 나라의 제도가 특별히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음
- 한국은 개인 지원의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늦게 이루어진 편이며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면서 제도를 정비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책 시사점 3) 기관지원

- 기관지원에서는 특수목적지원에서 일반지원으로 완전한 전환 요구

- 정부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전평가를 기반으로 소수의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움
- 산식(formula) 기반의 일반지원으로 국공립은 미국의 여러 주(州)의 사례를, 사립의 경우 일본의 사립대 경상비 지원을 참조할 수 있음

- 미국 주립대학 지원의 특징과 시사점

- 미국에서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지표로 활용하는 주들이 있는데, 한국도 국가장학금 제도의 운영을 통해 가구 소득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 학생을 기준으로 한 지원 공식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임
- 한국에서는 졸업생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취업률은 물론 취업의 질까지 고려한 지표가 활용될 수 있어 산출지표 활용 면에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나은 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사립대 경상비 지원과 시사점

-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인구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대책 중 하나로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짐
- 사용의 자율성, 자금의 규모 확대라는 면에서 일본의 사립대 경상비 지원은 특수목적지원 사업을 정리해가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제도라고 판단됨

○ (정책 시사점 4) 연구지원

- 연구지원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개인지원과 기관지원으로 나누어 중요한 특징과 정책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이 중 주목해야 할 사례는 고등교육 연구 분야의 성과 평가와 관련한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으로, 영국은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핵심 연구 보조금을 대학에 할당하기 위한 방식으로 동료 평가(peer review)만 사용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BK21 사업과 같은 사업단 위주의 지원에서 기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동료평가 시스템의 정착은 장기과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갈 필요가 있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2. 11.)

Ⅲ. 정책분야(8건)

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 방향

- 2022년은 경제회복 국면과 경기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한 해임
 - 유례없는 경제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이로 인한 추가 감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 경제불안과 더딘 회복 국면일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재정환경과 감염병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향후 재정정책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제시된 방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그중에서도 ‘다양한 양극화 상존’, ‘재정관리’를 비롯한 국가위기 거버넌스 수준의 중요성과 정도를 조명하고자 하였음
 - 실증분석에서는 주요국들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ICT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한 가운데 각국의 ‘소득재분배’ 정도와 ‘재정관리’ 수준 역시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하였음
- 본 원고는 우리나라의 2022년 이후 회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순차적인 분야별 재정투자,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잠재성장을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도 동시에 제안함
 - 중기재정계획의 설계는 첫째, 지속가능성 확보, 둘째, 확장재정조치 이후의 경기안정화, 셋째, 단순하고 적용가능한 재정준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IMF(2021c)에서 제안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과 관련한 대안으로 첫째, 법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잠식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초·중등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재배분하여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노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것을 제안함

- 둘째, 경제위기 이후 재정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중요해진 지금, 중기계획의 의미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강조하고자 함. 재정준칙과 같은 재정규율이 구체화된 중기계획은 국가의 신용도와 신뢰성 확보에 영향을 주고, 이는 급증한 채무부담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셋째, 긴급 재정지원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비전통적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함. 재정지출의 긴급성, 외부성 등으로 수용해야 했던 비전통적 정책의 경우, 인식부족, 자료부족, 역량부족 등으로 정책분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비전통적 정책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사용될 정책수단으로써, 이에 대한 재정규모 파악과 체계적인 검증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함

출처 : 조세재정구원(2022. 12.)

2.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 현금성복지사업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중에서 현금성 사업으로 지출하는 복지사업
- 현금성 사업은 주민(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지급방법 중 “현금 및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는 사업(사회보장위원회 정의)

○ 현금성복지사업의 규모(2017~2021)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 사업은 연평균 8% 증가, 현금성사업은 39%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사업의 규모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지출사업의 3% 수준



○ 현금성복지사업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위한 책임성 확보 방안

- (방향성) 현행 운영의 문제를 파악하여, 운영문제를 통제하는 방향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을 정착화하는 정부 또는 공공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선행요건)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DB구축
- (책임성 확보방안) 제도 운영의 거버넌스 체계와 접목하여 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

		강제성 (coerciveness)	
		높음	낮음
직접성 (directness)	높음	행안부 내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현금성 복지 예산 편성한도액 설정 사회보장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예산편성 통계목 분류기준 마련 예) 현금성 수혜 (301-13)
	낮음	보통교부세 제도 활용 재정분석지표 활용	재정정보 공개 주민참여 강화

출처 : 지방행정연구원(2022. 12.)

3.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 한·EU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의의를 돌아보고, 한·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
 -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Next Generation FTA)’의 첫 사례

- 실증분석 결과, 한·EU FTA는 한국 기업의 EU 진출전략을 다변화한 것으로 평가됨
 -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였으나, FTA 이후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은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활성화
 - 이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됨

- 자동차 산업,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의료용품 산업 등은 한·EU FTA 발효 10년간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줌
 - 자동차 산업에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은 EU의 기후변화 대응과 생산 역량 확충에 기여
 -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EU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급증에 한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

- 한·EU 경제협력 강화 유망 분야로 수소경제, 데이터 규제 협력, 스타트업 지원, 시청각물 공동제작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분야의 협력 강화는 양측이 공히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브리핑, 2022. 12.)

4.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 내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유럽이 아홉 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 신규투자, 운송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됨
 -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지속 감축하였으며, 그 여파로 유럽의 에너지 시장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
 -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생산비용 증가, 공급망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2023년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EU 및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급, 에너지 소비 절감, 공급원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EU는 2022년 5월 △ 에너지 소비 절감 △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담은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시함
 - 단기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전력원을 비축하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과의 에너지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목표를 증대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계기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음
 - 개별 EU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에너지 가격상한제 시행, 관련 세금 인하, 초과이윤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유럽 에너지 위기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으나, 세계 에너지 시장 가격 교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개별 가구 및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유럽의 LNG 공급 확대로 에너지 시장 내 경쟁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유럽이 시행한 정책 일부에 대한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협력 등의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늘의 세계경제, 2022. 12.)

5.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

-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상생의 발전 토대를 형성해왔으며, 양국 관계가 성숙한 만큼 협력의 폭과 깊이를 한 차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베트남의 1992년 12월 22일 공식 외교관계 수립 당시 기준 약 5억 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 30년 사이 160여 배 증가하며 2021년에 807억 달러를 돌파함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한반도 정세 악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2021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상대국(누적 기준)이자 아세안 지역 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
 - 양국간 교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인 저위기술 품목에서 고부가가치의 중고위 첨단기술 품목으로 바뀜
 -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도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해서 저위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급 및 첨단 기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함
 - 공급망 측면에서 최근 5년 사이 한국은 베트남에 의존적인 품목 수가 증가한 반면, 베트남은 품목 수 면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 관계의 다가올 미래 30년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2023년 교역액 1천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은 신흥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협력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 고령화, 인플레이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교역 확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측면에서 양국은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재·부품 산업의 R&D 및 기술 이전, 베트남의 아세안 지역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 양국간 협력 고도화가 필요함
- 한편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및 기술 이전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최근 지체되고 있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늘의 세계경제, 2022. 12.)

6. 특별지방자치단체 탈퇴·중단에 관한 쟁점과 전망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추고 의회를 구성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특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규약 제정 후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의 규약 승인을 통해 설치됨
-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동법 제208조에 따라, 가입·탈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고, 특별자치단체의회의 동의를 받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야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은 동법 제209조에 따라, 목적 달성 등 해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 승인을 받아 해산하며, 위임사무의 경우 원래 사무를 수행하던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안부가 조정함

○ 부·울·경 메가시티의 설립 및 위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탈퇴·해산에 관한 첫 시도는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연합의 사례로서, 메가시티의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자 그 해산을 시도한 첫 사례로서의 시사점을 논하고자 함
- 지난 2019년 메가시티를 제안하면서 3개 시·도에서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사무 발굴 및 공동 규약안을 마련하였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 의회의 승인 및 2022년 4월 행안부 규약승인·고시,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구성을 통해 설립되어 2023년 1월부터 사무를 개시하는 예정에 있었음
-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도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포함하는 국정과제(114번)를 제시하였고, 2022년 4월 행안부의 규약승인 직후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짐
- 그러나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시·도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사무 및 재정 이양이 필요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구속력이 강한 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각 시·도 연구원에서는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 용역이 시행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특별법의 제정이 요원한 가운데, 2022년 9월 마침내 경남도는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뒤이어 울산도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같은 해 10월 3개 시·도의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함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과 해산 절차 추진 현황]

시기	주요 추진내용
2018.06	3개 시·도 부·울·경 상생협약 체결
2019.03.~12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및 메가시티 플랫폼 제안
2020.03	3개 시·도연구원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 연구 착수
2020.09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사)부울경발전협의회 출범
2020.1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화 및 설치근거 마련 등
2021.12~04.	국가의 적극적 지원 천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 설치방안 연구 등
2021.06~07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설치 행안부 승인 및 합동추진단 사무국 개소
2022.04	각 시·도의회 부울경 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통과, 행안부 규약안 승인·고시, 정부 및 3개 시·도간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초광역권 발전계획 마련 등
2022.0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민선 8기 부·울·경 출범 및 추진방향 예상
2022.07.27	윤석열 정부 부울경 메가시티 포함 120개 국정과제 확정
2022.09.19	경남도의 실효성 검토 이후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한 특별자치단체 탈퇴 선언
2022.09.26	울산 중단 공식화 및 행정통합 거부로 인한 사실상 특별자치단체 좌초
2022.10.12	3개 시·도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무산 및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발표
2022.10.26	행안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 절차 안내(업무연락)
2022.12	각 시·도의회 규약 폐기안 본회의 의결 예정, 직후 행안부 해산 승인·고시 예상
2023.01	당초 특별자치단체 사무개시 예정이었으나,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 예정에 따라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 신설 준비(시의회 의결 등)

자료: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탈퇴·해산의 쟁점과 시사점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탈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208조에 따라야 하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동 조항을 적용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행안부는 동법 제209조에 따라 탈퇴가 아닌 해산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해산의 경우, 행안부에 의해 승인·고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22.04.18.)의 폐지·고시가 필요하며, 행안부는 10월말 그 절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며 안내하였고, 각 시·도 의회가 규약 폐기안을 12월 중 의결하면, 그 직후 행안부는 승인·고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다만 당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했던 각 시·도의 단체장이 바뀌고, 의회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 차가 존재하는 등 각 의회의 의결에 난항을 전망하는 견해도 있으며, 해산 의결의 실효성 및 해산 조항의 적용에 관한 적절성 등에 관한 일부의 우려도 존재함
- 아울러 초광역 경제동맹으로의 선회에 따라 기존 국가사무의 특별자치단체로

의 이양 등에 관한 「분권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기반한 초광역 협력사업과 국비확보 등 원활한 추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통합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동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실현가능성 등의 우려가 존재함

- 이상과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의 어려움, 참여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조율, 국가사무·재원의 이양 등 추진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추진의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탈퇴·해산, 대안의 추진 등에 있어서 많은 쟁점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정책설계가 요구됨
- 예컨대, 각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의회·행정부의 대립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 고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특행기관 설치, 행정위탁 및 협력 구조 모델의 대안 제시) 등 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제도적 보완과 아울러 현장에서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 노력이 필요함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12.)

7.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사례 고찰과 시사점

-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1)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중소병원 대상으로 인증된 EMR 사용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 5개 국가(미국,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에서는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과 다양한 중소병원 맞춤형 정책(추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제도 적

1) Electronic Medical Record: 한 의료기관 내에서 생성·관리되는 환자 진료 관련 정보의 전자기록을 의미. 시스템 도입 비율은 높지만, EMR 제품 차이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낮음

응 지원, 교육·훈련, 기술 지원, 상담, 인식 향상 세미나 포함)을 시행했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은 인증제를 통해 국가 표준에 맞는 EHR을 도입하고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EHR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지역확장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 이하 REC) 프로그램으로 중소병원의 EHR 도입과 의미있는 사용(meaningful use)을 촉진함
 - 영국은 국가 정보기술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IT)를 통해 국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했으나 여러 반대로 인해 2011년에 폐지된 후 지역 중심으로 변환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상호 호환성에 대해 인증을 받은 개발 업체의 EMR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됨
 - 대만은 국가 EHR 교환센터를 통해 전국적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적인 EHR 도입 가속화 계획을 세워 EMR 표준화 및 확산 정책을 시행함
 - 호주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EHR(Personally Controlled EHR, PCEHR)을 구축해 가다가 2016년에 ‘마이 헬스 레코드(My Health Record)’ 라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면서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으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함
 - 캐나다는 상호 호환이 가능한 EHR(Interoperable EHR, iEHR) 시스템 도입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총 25억 달러 규모의 국가 디지털헬스 사업(2001~2020년)을 통해 인증된 EHR 시스템의 발전 및 확산을 지원함
-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병·의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인증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함
- 첫째, 국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음
 - 둘째, 병원과 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산을 위해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병·의원의 실제적인 필요(참여 주저 이유, 유인책)를 찾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EMR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

증된 EMR 사용에 대한 혜택을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12.)

8. 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전략경쟁 동향과 시사점

○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미국이 AUSKS, PBP 출범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이하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등 태도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태도국은 규모가 작은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등한 투표권 행사로 인한 국제사회 내 영향력 △세계 주요 해상 수송로인 태평양 항로가 위치한 지리적 요건 △광대한 규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한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 보유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 위치 등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협력 동향

- 지난 40여 년간 중국은 지정학·외교·경제적 측면에서 태도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음
-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미·중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태도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태평양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음
- 역대 중국 지도부는 태도국을 직접 방문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교류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다자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해 중점 협력 분야 및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음
-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태도국과의 교류·협력을 도모해왔으며, 최근 중앙정부는 중점 분야별 협력 센터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정부 간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중국과 태도국 간 무역 및 투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화하고 대외원조를 통한 공동 발전과 번영을 강조해 왔음

- 2022년 4월 중국은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 체결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미국, 호주, 일본이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됨
- 중국은 지진, 화산 폭발, 해수면 상승 등 태도국이 직면한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재생에너지 협력, 친환경 발전 전략 공유 등을 지속해 왔음
- 중국은 태도국의 의료 서비스 보급 확대 및 국민 건강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해왔음

○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

□ 미국

-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태도국과의 협력에 한동안 소홀했으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이 본격화되자 ‘아시아 회귀(Pivot-to-Asia) 전략’ 과 ‘인도·태평양 전략’ 을 통해 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태도국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지원을 의식하며 최근 재정 지원 확대 약속을 지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태도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재구축하고자 미국 대사관 추가 설립, 안보협력 강화, 인적교류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함

□ 호주

-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도국과의 관계가 호주의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태도국의 정치·경제·안보 분야 등에 가장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음
- 호주는 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 중심의 인프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새로 취임한 알바니즈 총리는 ODA 증대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을 강조하고 있음
- 알바니즈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신임 외교장관을 태도국에 파견하고 PIF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태도국과의 외교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 일본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태도국을 위임통치한 것을 계기로 역사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일본은 오래전부터 태도국의 경제·외교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재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ODA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한편, 미국과 공동으로 호주의 AIFFP에 참여하는 등 소다자 협력에도 동참하고 있음
- 일본은 태도국과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양자·다자 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으며,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다자협력 이니셔티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태평양 도서국의 입장

- 태도국은 인종·지리적 기준으로 세 지역(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으로 각 지역별로 주요 파트너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음
- 태도국은 중국과의 양자간 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한편 전방위적 다자간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국가별 입장이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과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관측됨
- 태도국은 강대국 간 정략적 경재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면서 경제발전, 기후변화, 불법 어업 근절 등 도서국으로서의 존속이 달린 사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태도국 내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주요국 간 전략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에 있어서 태도국은 주요 해상교역의 통로가 위치한 지역이며, 주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래 협력 파트너이자 ‘한국판 인도 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태도국과의 협력 기반 및 외연 확대를 위해서 독자적인 중장기적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태도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태도국 간 외교관계 · 인적 교류가 교착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급 회담 정례화 △PIF 참석 △대사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대화 채널을 유지·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태도국을 둘러싼 다양한 협력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호주 등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태도국의 당면과제인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2. 9.)

IV. 법률 제·개정(2건)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이하 “**한도초과지방채**”라 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채의 발행과 채무보증에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5항 신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
-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 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별 맞춤형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됨
 -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유학을 사유로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재정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자격기본법(일부개정)】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하게 규정함
 - 이를 통해,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위원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 【붙임】 법안 주요 내용

출처: 교육부(2022. 12.)

붙임

법안 주요 내용

순	법률명	주요 내용
1	<p>초·중등교육법</p> <p>이태규, 16897 강득구, 17236 강민정, 168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 ·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범위 확대
2	<p>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p> <p>조경태, 1487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3	<p>자격기본법</p> <p>서동용, 174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명확화
4	<p>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p> <p>유기홍, 150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